



제426회 국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민주시민의 날(12월 3일)을 공휴일로 지정〉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27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해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7.
3. 회부연월일 : 2025. 4.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일당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동원해 침탈했으며, 시민의 정치적 활동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12.3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문란케 함.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시민은 윤석열 일당의 폭력적 준동에 항거하기 위해 국회 앞으로 모여 군의 진입을 막아세웠고, 국회 구성원들은 계엄군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했으며,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해 계엄군의 철수를 이루어냈음.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1조제2항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민주주의를 기념·추모하는 국경일과 공휴일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사상 초유의 대통령 친위쿠데타에 맞서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일인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과 공휴일로 삼아 민주시민의 승리를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위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민주시민의 날”(12월 3일)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로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¹⁾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u>개천절 및 한글날</u> 2. ~ 10. (생략)	제2조(공휴일) ----- ----. 1. ----- ----- <u>개천절, 한글날 및 민주시민의 날</u> 2. ~ 10. (현행과 같음)

1) “민주시민의 날”(12월 3일)을 국경일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209623호,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2025. 4. 7. 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음.

2. 검토의견

개정안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실 관계와 관련하여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규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민주시민의 날”(12월 3일)을 국경일에 해당하는 기념일로서 법정 공휴일로도 지정하려는 내용임.

법정 공휴일을 신설하는 것은 공휴일 제도의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고유한 입법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으로,²⁾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민주시민의 날”(12월 3일)의 국경일 여부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되, 공휴일 지정 내지 확대에 따른 입법적 영향에 중점을 두고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경일로 지정된 특정한 날을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는 해당 국경일의 의의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점, 공휴일 확대로 국민의 휴식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소비 진작을 유도하여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반면, 법정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³⁾에 따른 유급 휴일로

2) 참고로, 제헌절(7월 17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3)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

서 공휴일의 확대는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가 주요 국가 대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관공서가 휴무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점검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견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바,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주요 국가 공휴일 수>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공휴일 수	15일	16일	11일	12일	8일	10일	11일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공휴일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해당일의 의미를 국민적 차원에서 기릴 수 있다는 측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고, 주요 선진국 대비 적지 않은 공휴일 수(15일)와 최근 대체공휴일을 확대해 온 상황('21년 4일, '23년 2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전체 공휴일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

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지 않은 점, 최근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여 온 점을 감안할 때, 공휴일이 추가로 지정될 경우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바,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